

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8-20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자	거창군수
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「지방세법」 개정(시행 '18.1.1.)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확대함(안 제14조)
 - 부과기준세액: 10만원 이하 ⇒ 20만원 이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법」 제115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8. 2. 12.~3. 5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도내개정현황(입법예고 9)

○ 김해, 밀양, 사천, 양산, 진주, 창원, 산청, 함안, 함양

(7)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세조례”를 “거창군 군세 조례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10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거창군세조례</u>	<u>거창군 군세 조례</u>
<p>제14조(납기)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<u>10만원</u>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납기) ----- ----- -----<u>20만원</u>----- ----- -----</p>